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행정사무감사 중점확인 사항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4. 6.

서 강 동

#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동 감사 중점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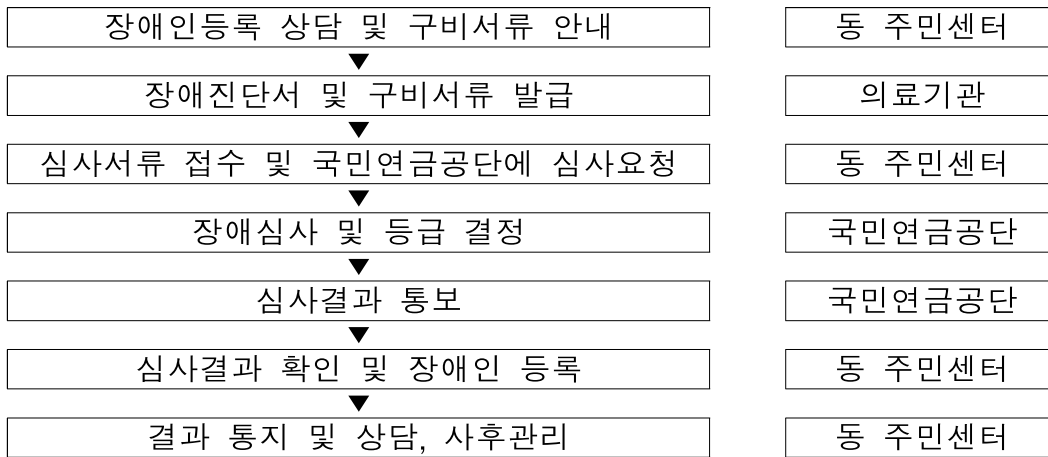
(감사대상기간: 2021.1.1.~2024.4.30.)

연번	직위	성명	중 점 확 인 사 항	페이지
1	위원장	채우진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	
2	부위원장	이상원	2-1.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1
3	위원	권인순	3-1. 실뿌리복지동행센터( 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3
4	위원	김승수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4-2.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4-3.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8
5	위원	백남환	5-1.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11
6	위원	오옥자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6-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3
7	위원	장정희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 바우처 등 7-2. 경로당 관리 현황	16
8	위원	차해영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18
9	위원	한선미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23

<b>중점확인사항</b>	(이상원 위원)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전문의 진단 결과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자
-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명)

합 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675	273	85	67	107	7	35	1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	5	1	12	3	40	20	18

- 장애인 등록현황(상세): 성별, 장애정도별

구 분	성 별		장 애 정 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 계	675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366	309	254	137	117	421	229	192

- ▶ 외국인(장애인) 등록현황 (단위:명)

등록외국인 수	성별(나이)	주장애	장애정도
2	여(26세)	정신	심한 장애
	남(69세)	언어	심한 장애

- ▶ 시청각장애인(데프블라인드): 관내 대상자 없음

○ 작성자 : 김아림(사회9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최소 50,000원 ~ 최대 424,810원	60,000원(시설 30,000원)

○ 지원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연금	804	215,289	780	226,647	732	224,437	250	87,374
장애수당	625	25,200	653	26,720	660	41,620	176	14,520

▶ 장애아동수당

- 지원자격: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최소 110,000원 ~ 최대 220,000원(시설 30,000원)
- 지원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아동수당	4	800	23	3,470	12	2,640	4	880

■ 복지카드 및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 포함)

○ 발급대상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 ※ 고속도로할인카드 기능 추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보호자 및 차량 1대에 한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4.
복지카드	50	64	65	15
통합복지카드	49	78	74	16
합계	99	142	139	31

■ 자동차표지 교부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거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4.
합계	41	54	52	14

○ 작성자 : 김아림(사회9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b>중점확인사항</b>	(권인순 위원)
3-1. 실뿌리복지동행센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3-1. 실뿌리복지 동행센터(舊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실태
  - 개념: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
    - 2015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빈곤, 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 지원하고 통합상담을 강화하는 복지, 건강 중심의 마포형 동 주민센터
  - 주요 개편사항
    - 복지·건강분야 기능 중심으로 사업범위 조정
    - 마을·주민자치·여성분야 제외, 우리동네주무관 사업 종료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b>복지</b>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료	
	출산·양육가정 보편방문	종료	
	빈곤·돌봄위기가구 방문	질적 방문 강화, 신규가구 발굴·방문강화	
<b>건강</b>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료	
	건강취약계층 방문	(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 계속관리

- 추진방향
  - 서울시 동행센터 개편에 따른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플래너 등의 취약계층 집중 방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방문)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 건강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추진
  - 실뿌리 복지전달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마포형 지역·주민밀착형 동 중심 복지지원 강화
- 인력 운영현황

계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상담전문관
7	6	1	3(복지플래너와 중복)

○ 작성자 : 한은경(사회7급)    ○ 검토자 : 이운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주요사업 내용

과 제	구 분	업 무 내 용	
복지·건강 중 심 복 지 전달체계 구 축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빈곤·돌봄 위기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존 복지대상자, 은둔형 취약계층 주민</li> <li>- 내용: 빈곤·돌봄위기가구 체계적 방문관리, 예방복지 서비스 실현,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li> </ul>
	방문간호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건강취약계층</li> <li>- 내용:(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 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 보건소 집중관리 계속관리: 동 방문간호사 주기적 관리</li> </ul>
통 합 서 비 스 제 공	복지상담 전 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방 민원인의 표현되지 않은 이면의 욕구까지 포착하여 종합 심층 상담 및 서비스 관련기관 연계</li> <li>- 복지서비스 신청 초기상담 시 전문적인 종합상담을 통해 서비스 누락 예방</li> <li>-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정보 제공</li> <li>※ 지원절차: 내방상담(기본사항 확인, 복지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신청·접수 → 서비스 관련기관 의뢰 → 사후처리</li> </ul>
	동 단 위 사 례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문제해결에의 주도적인 지원체계 구축</li> <li>- 동주민센터, 민간기관, 구 지역복지팀 협업 추진</li> <li>※ 지원절차: 사례발굴·접수(주민, 공무원 등) → 욕구 실태조사 (동 사례담당) → 내부 사례회의(동 복지팀)/ 통합 사례회의(동 사례위원회)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동 사례위원회) → 종결 및 사후관리(동 사례위원회)</li> </ul>
복 지 생 태 계 구 축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 성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소외계층의 상시 발굴 및 이웃이 이웃을 돕는 동 단위 복지 기능 및 인적 안전망 구축</li> <li>-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 특화사업 추진</li> </ul>
	주민관계망 활 성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주민의 주민관계망 강화</li> <li>- 인적·물적 복지자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li> </ul>

○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실적**

- 복지·건강 중심 복지 전달체계 구축 추진실적
-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추진기간	추진율(%)	모니터링계획(건)	모니터링실적(건)	서비스연계(건)
2024.4.	101	366	369	530
2023	101	1,287	1,300	1,007
2022	101	1,309	1,322	1,270
2021	106	1,307	1,338	1,103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연계, 후원물품 연계 등

- 방문간호서비스 운영 실적

구분	관리대상 (명)	방문간호서비스(회)				보건복지 연계(건)
		계	직접방문	내소방문	전화방문	
2024.4	440	643	270	54	319	44
2023	419	1,957	888	181	888	249
2022	349	1,038	210	251	577	152
2021	334	1,292	67	304	921	133

-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복지상담전문관

추진기간	복지상담(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건)
2024.4.	2,123	354
2023	5,440	718
2022	5,137	935
2021	5,575	758

-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기간	사례회의(건)			사례관리(건)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4.4.	7	7	-	1	-	-	1
2023	28	28	-	7	3	1	3
2022	37	35	2	20	8	11	1
2021	50	48	2	28	20	5	3

○ 작성자 : 한은경(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복지생태계 구축 추진실적

추진기간	추진내역
20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협의회 특화사업 『서강이와 아름다운 동행』 추진(4월~): 총 140명 지원(8,7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독거 장애인 120가구에 고단백 건강꾸러미 전달</li> <li>· 서강이네 행복나들이: 외출경험이 적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20명 선정하여 한국민속촌을 탐방, 식사 및 기념사진촬영을 함께하며 정서적지지</li> </ul> </li> <li>- 촘촘이음단 특화사업 『나누세 모이세』 추진: 총 120명 지원(2,4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 올리고: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90가구에 밀키트 전달(2,010천원)</li> <li>· 은빛생신상: 개인후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30가구에 생신케이크 전달(450천원)</li> </ul> </li> <li>-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824건)</li> <li>-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진: 참여자 26명</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협의회 특화사업 『서강이와 아름다운 동행』 추진: 총 140명 지원(6,0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독거 장애인 120가구에 고단백 건강꾸러미 전달</li> <li>· 서강이네 행복나들이: 외출경험이 적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20명 선정하여 양화진벚길을 탐방, 식사 및 기념사진촬영을 함께하며 정서적지지</li> </ul> </li> <li>- 촘촘이음단 특화사업 『나누세 모이세』 추진: 총 116명 지원(2,6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 올리고: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86가구에 밀키트 전달(2,200천원)</li> <li>· 은빛생신상: 개인후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30가구에 생신케이크 전달(450천원)</li> </ul> </li> <li>-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2,044건)</li> <li>-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진: 참여자 24명</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협의회 특화사업 『서강이와 아름다운 동행』 추진: 총 155명 지원(5,02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치매독거노인 및 독거 장애인 155가구에 고단백 건강꾸러미 전달</li> </ul> </li> <li>- 이웃살피미 특화사업 『나누세 모이세』 추진: 총 41명 지원(2,0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빛생신상: 개인후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30가구에 생신케이크 전달(450천원)</li> <li>· 서강동 이웃살피미 워크숍 2회 추진: 이웃살피미 11명 참석(1,600천원)</li> </ul> </li> <li>-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3,661건)</li> <li>-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진: 참여자 25명</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협의회 특화사업 『서강이와 아름다운 동행』 추진: 총 141명 지원(6,411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140가구에 방역물품, 반려식물 및 건강꾸러미 전달</li> <li>· 서강이네 행복하우스: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접수리 지원 1회 1명</li> </ul> </li> <li>- 이웃살피미 특화사업 『나누세 모이세』 추진: 총 30명 지원(4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빛생신상: 개인후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30가구에 생신케이크 전달</li> </ul> </li> <li>-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1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953건)</li> <li>-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진: 참여자 42명</li> </ul>

○ 작성자 : 방진석(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3-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태

- 최초구성일: 2014.11.12.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
- 조직체계: 공동위원장(공공, 민간) 2명, 위원 16명  
- 구성현황

합계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통장	직능단체 위원	종교인	자영업자	기타 지역주민
18	1	2	6	5	0	0	4

- 협의체 역할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위험 가구 포함)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 운영실적

추진기간	회의 교육	특화사업 『서강이와 아름다운 동행』	
2024.4.	1회	추진기간	2024. 4월 ~ 2024. 12월(예정)
		추진내용 (2개사업)	-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단백 건강꾸러미를 만들어 전달/총 4회, 120명 - 서강이네 행복나들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중 사회적고립 위기가구 나들이 실시/ 총 1회, 20명
		소요예산	8,740,000원
2023	4회	추진기간	2023. 4월 ~ 2023. 12월
		추진내용 (2개사업)	-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단백 건강꾸러미를 만들어 전달/총 4회, 120명 - 서강이네 행복나들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중 사회적고립 위기가구 나들이 실시/ 총 1회, 20명
		소요예산	6,050,990원
2022	4회	추진기간	2022. 5월 ~ 2022. 12월
		추진내용 (1개사업)	-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치매독거노인 및 독거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단백 건강꾸러미를 만들어 전달/총 4회, 155명
		소요예산	5,024,530원
2021	4회	추진기간	2021. 4월 ~ 2021. 12월
		추진내용 (2개사업)	- 아름다운 동행: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에 방역물품, 반려식물 및 건강꾸러미(구운계란 등) 전달/총 4회, 140명 - 서강이네 행복하우스: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집수리 지원/총 1회, 1명
		소요예산	6,411,460원

○ 작성자 : 방진석(사회7급)    ○ 검토자 : 이운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중점확인사항**

(김승수 의원)

-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4-2.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 행정
- 4-3.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기초연금제도 개요

- 근거: 기초연금법
-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2,130,000원) / 부부가구(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공제액-부채)×4%/12개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공적연금, 재산소득 등
-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2천만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지급
  -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 중 1인 수급: 최저 33,480원/ 최고 334,810원
  - 노인부부 동시 수급: 최저 각각 33,480원 / 최고 각각 267,840원(20% 감액)

○ 기초연금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명)

추진기간	65세 이상	신청자	책정자	책정제외
2024.4	3,450	83	30	31
2023	3,410	212	99	113
2022	3,306	206	85	121
2021	3,120	217	96	121

○ 기초연금 지원현황

추진기간	대상자(가구/명)	지급건수(건)	지원금액(천원)
2024.4	1,024 / 1,286	3,748	1,136,263
2023	996 / 1,246	14,804	4,299,640
2022	1,104 / 1,324	14,900	4,186,012
2021	1,017 / 1,214	12,822	3,813,998

※ 관내 전체 노인인구(3,450명/'24.4.30.기준)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 37.2%

○ 작성자 : 박장식(사회8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4-2.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방문행정(모니터링) 추진체계(동주민센터)
  -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수립(행복e음, 모니터 주기 등)
  - 대상자 모니터 상담 후 행복e음 상담결과 등록
- 대상가구 현황: 총 365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위기도 분류표

구분	위기도	주기	내 용
고립 위기 단계 (상시안부확인)		주 2회	- 고립 위험군 중 '고·중·저위험'가구 ※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위기단계"로 관리 ※ 주 2회는 AI(모바일 안부콜 시스템), 우돌단에 의한 안부확인/월 1회는 방문상담
고립 위급 외 가구	1단계	월 1회	- 일상생활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등 개별서비스 연계 외에 상담,치료,생활관리 등 서비스 통한 기능회복 필요 가구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운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2단계	분기 1회	- 외부 사회서비스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금품 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4단계	연 1회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 (단위:명)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365	286	72	7

※ 기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복지급여 중지되었으나, 독거노인 또는 중장년 1인 가구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 / 복지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몸이 아픈 노인 부부가구

○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건)

계	2021	2022	2023	2024.4.
4,329	1,338	1,322	1,300	369

- [독거노인]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명,건)

추진기간	인원	추진실적
2024. 4.	136	208
2023	137	685
2022	119	650
2021	121	671

○ 작성자 : 한은경(사회7급)    ○ 검토자 : 이운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4-3.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2024. 4. 30.현재)

#### ○ 7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	총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1,670	1,208	436	26

#### - 75세 이상 노인 인구 수(성별·연령별 상세)

구분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세 이상
남	271	226	116	35	8
여	391	320	207	78	18
합계	662	546	323	113	26

#### - 95세 이상 노인 인구 수(성별·연령별 상세)

구분	계	95세	96세	97세	98세	102세
남	8	3	3	1	1	0
여	18	4	8	4	1	1
합계	26	7	11	5	2	1

#### ○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	총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381	278	99	4

※ 독거노인 비율: 22.8%

○ 작성자 : 박장식(사회8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b>중점확인사항</b>	(백남환 의원)
5-1.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5-1. 돌봄SOS사업 운영실적 (2019. 7월부터 시행)**

- 사업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中  
 어르신, 중장년(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만 6세 이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 ※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2호
- 사업내용: 독립적 일상생활에 수행이 어렵고 불가피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1인 연간 지원한도 금액: 1,600천원)

서비스명		내 용	서비스 한도 (연간)
일시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60시간
일 상 편 의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30식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병원내원 동행 등)	12회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지원(방충망, 안전 바 설치 등)	재료비 15만원
	단기시설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	14일

※ 일시재가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이용 시 교통비 연 12만원까지 지원

- 운영실적 (단위:가구,건)

추진기간	지원가구(중복제외)				서비스유형					
	소계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 가구	소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편의
2024.4	19	11	8	-	33	7	-	4	15	7
2023	80	53	24	3	103	31	-	38	11	23
2022	54	40	13	1	84	33	-	26	11	14
2021	61	44	15	2	83	20	-	38	6	19

○ 작성자 : 김아림(사회9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 지원근거: 긴급복지 지원법
- 사업개요: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토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원)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 - 서울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원)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기준: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긴급복지 사업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2024년	신청건수	5건	5건
	지원금액	7,450	2,323
2023년	신청건수	113건	43건
	지원금액	125,409	34,781
2022년	신청건수	111건	67건
	지원금액	57,920	39,456
2021년	신청건수	128건	81건
	지원금액	96,985	44,338

○ 작성자 : 한은경(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중점확인사항**

(오육자 위원)

-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6-2. 노인일자리아사업 추진현황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
- 사업목적: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지원과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 자활근로사업 유형

구 분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자활사업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 근로	Gateway과정	마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동주민센터	

- 사업유형별 근로기준 및 내용 (단위:천 원)

구분 \ 대상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월 평균 근로일수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근로 임금 (월기준 표준소득)	지 급 액	61,930	54,200	31,800
	단 가	57,930	50,200	27,8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1,506,180	1,305,200	722,800
내 용		간병, 교육보조원, 청소, 요식업 등		환경정비

- 동 주민센터 자활근로 추진실적 (단위:명,천원)

구분	참여대상자 현황		지급액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2024.4.	3	0	9,565
2023	3	0	27,224
2022	3	1	43,404
2021	3	1	43,702

- 작성자 : 전효정(사회7급)    ○ 검토자 : 이운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6-2. 노인일자리 및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 ○ 사업 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절차: 운영계획(구, 동) → 접수(동) → 활동관리(동)
- 내용

사업명	①거리환경지킴이	②마을노노케어(마을환경지킴이)
유형	공익활동형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발	구(어르신동행과)에서 『공익활동형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내용	뒷골목청소, 무단투기 계도, 홍보 등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확인 및 말벗, 생활상태 점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 참여자 제외  
 ※ '마을노노케어'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021. 6.부터 '마을환경지킴이'로 전환되었다가 2022. 1.부터 사업 종료됨

사업명	③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유형	사회서비스형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발	수행기관(시립미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내용	동 환경 취약지역 중심으로 환경보안관 활동	
	- 에코리더(커피찌꺼기 수거 등)	- 클린미포(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 계도) - 녹색정비(틈새녹지조성 및 경관 개선) - 안삼미포(안전 취약지구 순찰)

※ 2023. 2.부터 사업시작

### ○ 추진 현황(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구분	2021	2022	2023	2024.4.
사업기간	2021.1.11. ~11.30.	2022.1.10. ~12.9.	2023.1.9. ~12.8.	2024.1.18. ~4.30.
사업유형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마을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수행기관	동 주민센터: 구 직영 7개 동(공덕~신수동) 미포시니어클럽: 9개 동(서강~상암동)			
활동비	만근 시 월 27만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만근 시 월 29만원
활동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월 10일) *혹서기는 근무시간대 조정			
배정인원	35명 (거리환경 29명/ 노노케어 6명)	33명	37명	25명

### - 근무 현황

- 근무일은 날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
- 거리환경지킴이는 팀장 2명 선임하여 청소구역별 안전 및 관리 역할

○ 작성자 : 박장식(사회8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추진 현황(우리동네 환경보안관)

구분	2023	2024.4.
사업기간	2023.2.1. ~11.30.	2024.2.1. ~11.30.
수행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9개 동(공덕~서교동) 마포시니어클럽: 7개 동(합정~상암동)	
활동비	월 712,800원	월 761,040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60시간(주 5일, 일 3시간)	
배정인원	4명	4명

- 기관별 역할

구청(어르신동행과)	동주민센터	수행기관
- 동별 건의사항 수렴 - 활동 및 실적 관리 - 주기적인 활동 모니터링 - 보조금 교부	- 취약지역 선정 - 직무계획 수립 - 출근부 확인 및 수합·제출 - 동별 직무교육 수시 운영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자 필수교육 실시 - 참여자 근무관리 및 임금지급 - 월별 활동 모니터링

- 근무 현황

- 날씨 등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우천 시 실내활동)
- 안전교육(6시간), 소양교육(5시간), 직무교육(6시간) 총 17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 2인 1조로 활동

○ 작성자 : 박장식(사회8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중점확인사항 (장정희 위원)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등  
 7-2. 경로당 관리 현황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사업개요

구분		대 상	내 용
주 택 지원	전세 임대	-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 대상 (※ LH, SH공사 수행)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임대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전세가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수시 임대		고시원, 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또는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 긴급지원 가구에 즉시 지원하는 전세 및 매입임대
집수리 지원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가구 (※서울시 수행)	도배, 장판, 방수,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 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가구 (※한국에너지재단 수행)	단열·창호 지원,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보급
주거비 지원	주택 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서울시 수행)	월세 일부 지급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8만5천원 지급)

○ 추진실적

추진 기간	주택 지원(신청/선정 건수)					집수리 지원(건)		주택바우처 (가구/천원)
	총계	전세	매입	영구	수시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2024.4.	35/미정	18/미정	15/미정	-	2/미정	0	3	38/3,255
2023	58/14	17/1	8/2	22/0	11/11	1	6	128/11,335
2022	56/13	11/4	18/3	23/2	4/4	1	4	106/9,385
2021	31/8	11/0	5/2	11/2	4/4	5	3	114/9,815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 현재 모집 안함 / 2024년도 전세·매입 임대주택은 심사중으로 결과 미정

○ 작성자 : 전효정(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7-2. 경로당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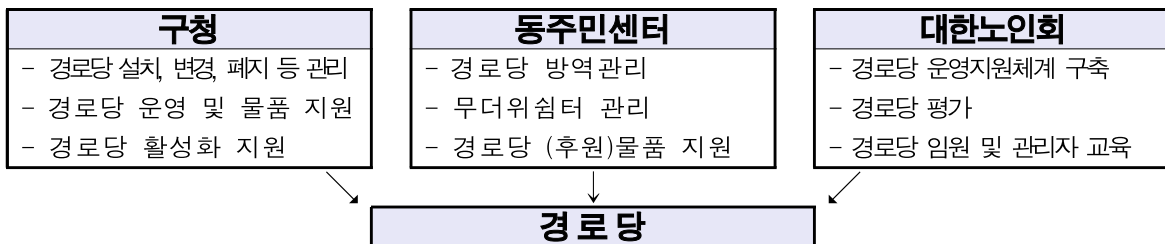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47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이용을 독려
-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경로당 현황: 총 14개소(구립 4개소, 사립 10개소)

연번	경로당명	주소	등록 회원수	방문인원 (평균)	중식(※)	프로그램 운영(※)	면적
1	(구립)창전동경로당	서강로1길 30	35명	22명	○	○	180㎡
2	(구립)상수경로당	와우산로14길 18	37명	13명	×	×	39㎡
3	(구립)당인경로당	어울마당로 14	22명	15명	○	○	37㎡
4	(구립)농바우경로당	와우산로5길 12	24명	15명	○	○	62㎡
5	창전삼성(아)경로당	서강로 95	41명	27명	○	○	238㎡
6	창전삼성(아)제2경로당	서강로 95	44명	21명	○	○	75㎡
7	신촌금호(아)경로당	서강로9길 19	24명	13명	○	○	94㎡
8	신촌태영테시앙(아)경로당	서강로9길 45	24명	15명	○	○	220㎡
9	상수두산위브(아)경로당	독막로18길 5	22명	14명	×	○	80㎡
10	서강쌍용예가(아)경로당	독막로 145	35명	16명	×	○	188㎡
11	한강밤섬자이(아)경로당	토정로 158	33명	22명	○	○	107㎡
12	서강해모로아파트 경로당	토정로 167	30명	14명	○	○	72㎡
13	래미안밤섬리베뉴1차(아) 경로당	독막로20나길 22	31명	28명	○	○	168㎡
14	래미안밤섬리베뉴2차(아) 경로당	독막로20나길 21	23명	23명	○	○	101㎡

※ 중식: ○(일주일 3번 이상), ×(식사 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프로그램(노래, 체조, 건강체조, 건강지압교실 등(수행기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 경로당 관리체계



### ○ 동주민센터 경로당 운영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4.
경로당 방역관리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관리 실태점검	-
무더위쉼터 관리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13개 배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미도래
경로당 물품지원	·마스크 3,510개 ·손소독제 124개	·백미(10kg) 13포 ·김치(7kg) 13박스	·백미(10kg) 14포 ·백미(20kg) 2포 ·김치(10kg) 14박스	-

○ 작성자 : 박장식(사회8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중점확인사항**

(차해영 위원)

-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지급현황**

□ 사업개요

- 근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선정기준 지침
  - 아동수당법 제4조 5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지원금액

사업명	대상자	0~11개월		12~23개월		24개월~ 86개월 미만	비고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자	22~ 23년	70만원	22~ 23년	35만원	1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차액 지급
		24년	100만원	24년	50만원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자	20만원		15만원			가정에서 양육시 지급

○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정부지원단가	비고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만0세	540,000	바우처 지급
		만1세	475,000	
		만2세	394,000	
		만3~5세	280,000	

□ 추진실적

(단위:명)

추진기간	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2024.4.	162	27	38	97
2023	328	49	91	188
2022	422	85	121	216
2021	410	195	-	215

○ 작성자 : 김초롱(사회9급)    ○ 검토자 : 이운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2021.12. 사업폐지)

□ 사업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2011. 1. 1.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급금액

대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급액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추진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1
신청건수 / 지원금액	138 / 42,100,000

■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 (\* 중복지원 가능)

주체	구분 사업명 및 예산(%)	지원대상 및 금액		비고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비50:시비50)	등록장애인 120만원	-	부부 모두 등록장애인이면 1가지만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남성장애인배우자 출산비용지원 (시비100)	-	등록장애인 120만원	
마포구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 (구비100)	등록장애인 150만원	심한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마포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추진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4.
신청건수	-	1	-	-
지원금액	-	2,500,000	-	-

\* 2021~2023년 당시 보건복지부 지원금액(100만원) + 마포구 지원금액(150만원)

■ 첫만남이용권 신청·지급 현황

-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항~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 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바우처)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 용 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추진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2	2023	2024.4.
신청건수	122	90	40
지원금액	244,000,000	180,000,000	89,000,000

○ 작성자 : 김초롱(사회9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모금현황

추진기간	구분	모금횟수(건)	모금액(원)
2023.11.15. ~ 2024.2.14.	성금	15	20,097,420
	온누리상품권	2	11,000,000
	성품	11	12,079,560
<b>소계</b>		<b>28</b>	<b>43,176,980</b>
2022.11.15. ~ 2023.2.14.	성금	12	18,033,000
	온누리상품권	1	900,000
	성품	14	36,223,460
<b>소계</b>		<b>27</b>	<b>55,156,460</b>
2021.11.15. ~ 2022.2.14.	성금	24	29,377,000
	온누리상품권	1	10,000,000
	성품 (가중치 50% 적용)	11	16,768,700
<b>소계</b>		<b>36</b>	<b>56,145,700</b>
2020.11.16. ~ 2021.2.15.	성금	22	30,356,400
	온누리상품권	3	16,000,000
	성품 (가중치 50% 적용)	14	12,333,000
<b>소계</b>		<b>39</b>	<b>58,689,400</b>

○ 작성자 : 방진석(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지원현황

추진기간	성금품	지원세대	지원금(환가액)(원)
2023.11.15. ~ 2024.2.14.	백미	50	1,759,800
	김치	349	9,739,760
	계란	100	580,000
	온누리상품권	110	11,000,000
<b>소계</b>		<b>609</b>	<b>23,079,560</b>
2022.11.15. ~ 2023.2.14.	패딩, 백미	195	13,246,260
	김치	138	8,237,680
	기타(계란, 즉석식품, 타월)	556	4,739,520
	온누리상품권	109	10,900,000
<b>소계</b>		<b>998</b>	<b>37,123,460</b>
2021.11.15. ~ 2022.2.14.	백미	277	8,224,900
	김치	123	6,520,500
	기타(생리대, 계란 등)	320	2,023,300
	온누리상품권	100	10,000,000
<b>소계</b>		<b>820</b>	<b>26,768,700</b>
2020.11.16. ~ 2021.2.15.	백미	44	1,724,000
	김치	635	7,188,000
	기타(빵, 계란 등)	553	3,421,000
	온누리상품권	160	16,000,000
<b>소계</b>		<b>1,392</b>	<b>28,333,000</b>

○ 연중 이웃돕기 지원 및 후원현황(따뜻한겨울나기 기간 및 정기후원 제외)

추진기간	후원금품내용	지원세대	지원금(원)
2024.4.	백미	22	652,600
	김치	120	1,975,200
	기타(밀반찬)	56	1,600,000
	현금	2	200,000
<b>소계</b>		<b>200</b>	<b>4,427,800</b>
2023	백미	60	1,759,800
	김치	120	1,975,200
	기타(삼계탕)	45	810,000
	현금	107	11,050,000
<b>소계</b>		<b>332</b>	<b>15,595,000</b>
2022	백미	60	1,560,000
	기타(온누리상품권, 김)	120	10,198,000
	현금	25	4,900,000
<b>소계</b>		<b>205</b>	<b>16,658,000</b>
2021	백미	68	2,530,000
	기타(온누리상품권, 마스크)	170	17,814,000
	현금	8	800,000
<b>소계</b>		<b>246</b>	<b>21,144,000</b>

○ 정기후원 현황 (2024.4.30. 현재)

후원자수	대상자수	월 후원금액	후원대상
1명	3명	150,000원	저소득 청소년

○ 작성자 : 방진석(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 사업목표

-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런 질병·사고 등 위기사항 해소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으로 가정해체 방지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5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 지원시기

- 특별생계비: 연 1회 지원 원칙 / 체납액: 2년 1회 지원

※ 최대 지원액 미만 지원시, 추후 차액 지원 불가

-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선정 후 지원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 신청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 복지정책과 지원결정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

- 체납액: 최대 50만원 한도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비 및 의료비	334,000	552,000	707,000	859,000	1,004,000	1,143,000	1,277,000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요금 / 최대 50만원 한도						

#### □ 추진실적

(단위:건,원)

추진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4.	4	1,298,120	-	-
2023	16	5,928,000	5	1,127,000
2022	12	4,349,000	13	3,110,470
2021	32	11,170,000	8	3,120,000

○ 작성자 : 한은경(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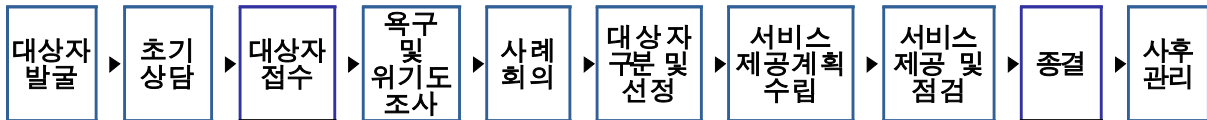


중점확인사항 (한선미 위원)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 사례관리 추진개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지원대상: 복합적·지속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로서,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및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 대상구분: 위기도 및 욕구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구분
  - 서비스연계 가구: 단편적 욕구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동사례관리 가구: 복합적 서비스 제공 및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구 통합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으로 구청 지역복지팀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추진절차



- 사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명)

계	동주민센터	구	복지기관
15	8 (주민주택상담 및 직원 7, 방문간호사 1)	2 (지역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1, 드림스타트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	5 (미포노인종합복지관, 미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미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미포구정산건강복지센터, 미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각 1)

**■ 사례관리 추진실적**

- 동 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4.4.	7	7	-	1	-	-	1
2023	28	28	-	7	3	1	3
2022	37	35	2	20	8	11	1
2021	50	48	2	28	20	5	3

- 동 사례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천원)

추진기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24.4.	3,938	600	5,200	-
2023	3,937	3,933	5,200	2,000
2022	3,772	3,772	3,200	3,241
2021	3,772	3,772	4,000	4,726

○ 작성자 : 한은경(사회7급) ○ 검토자 : 이윤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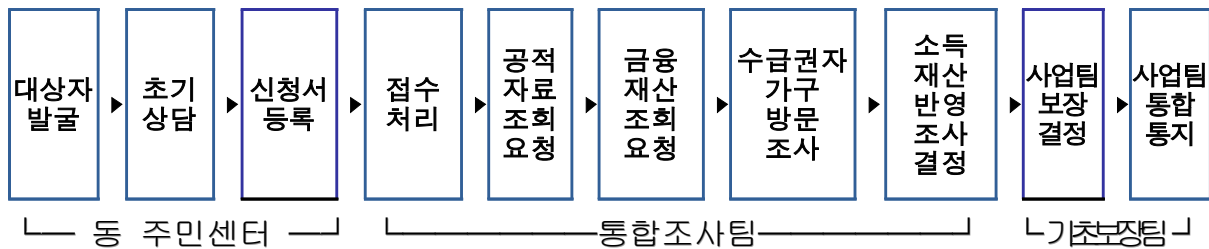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급여의 신청)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주거관련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업무 처리 절차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가구)

추진기간	신청			책정			
	합계	국민기초 (차상위포함)	한부모가족	합계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2024.4.	49	47	2	27	18	7	2
2023	130	127	3	61	39	22	0
2022	114	111	3	46	36	9	1
2021	152	150	2	65	59	4	2

※ 차상위 및 한부모 신청의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작성자 : 전효정(사회7급) ○ 검토자 : 이운선(행정6급) ○ 확인자 : 장은경(서강동장)

MAPQ